

『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상품권의 종류 및 기재사항 추가(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)
- 판매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8조)
-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(안 제10조,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상위법인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2020. 7. 2)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 상품권의 종류에 선불카드 및 모바일을 추가하고,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임.
- 카드형을 도입하면 가맹점 카드 수수료 발생과 카드 단말기 미보유 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고, 모바일형은 QR코드 결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이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, 불법 환전과 같은 지류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상품권의 모바일 전환 추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